

해양수산부의 “어의사”제도 등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에 대한 대책 추진상황

1. 7월

8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부처간 의견조회

농림부에서는 우리회, 검역원 및 각 수의과
대학에 의견 조회

8월 8일 해양수산부에서 “기르는어업육성법”
입법예고

8월 9일 대한수의사회 수의무위원회 및 전문가
합동 대책 회의 개최

참석자 : 수의무위원, 농림부, 검역원, 수의
대교수 등 20명

회의결과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농림부 의견조회에 검토의견 제출

해양수산부 입법 추진에 대응하여 대책위원회에서 대내외 활동

8월 11일 농림부에 대한수의사회 검토의견제출
(별첨) 및 시도·지부통보

8월 11일 세계수의사회에 협조공문 발송

세계수의사회 공식 입장, 세계 어병진료
현황 등 요청

2. “기르는어업육성법” 대책위원회 구성

구성

자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성

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개최일시 : 2000년 8월 16일(수) 16:00

참석인원 : 이우재회장외 대책위원

회의안건 : “기르는어업육성법률”에 대한 대응
논리개발 및 구체적인 대책추진 등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

1.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

기르는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자
원조성, 어장의 개발 확충 및 관련기술의 개발
보급과 수산자원조성금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예방 치료와 수산용동물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의사국가



시험과 어의사제도를 신설하며, 수산대학을 졸업한자만 어의사가 될 수 있고 현행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어패류진료조항을 삭제함.

2. 제72조(동물의약품등에대한특례)

어패류에 대한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하여는 동물의 생리 해부 조직 병리 등 기초수의학과,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및 수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중보건 미생물 기생충 약리독성 등에 대한 학문적 배경위에 어류질병을 예방 치료하여야 하므로 전세계적으로 6년제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이 관장하고 있으나, 수산대학(4년제)에서 어류에 대한 병리 해부 어병학 등 일부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어의사란 용어를 사용하여 수산생물 전체에 대한 진료를 관장토록 규정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안)은, 세계초유의 사례로서 국민 보건과 국가적 예산낭비와 입법질서를 문란케함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법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입법절차상의 문제

“기르는어업육성법률”안 부칙 제2조(다른법률의 제정)제2항에서 농림부의 수의사법제2조(정의) 2호중 동물의 범위에 어패류를 삭제 하여 수의사의 진료범위에서 어패류에 대한 진료를 제외하였으며,

동법률안 부칙 제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제8장 보칙” 제72조의6(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중에서

제3항의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준수에 관한 규정중 단서조항에서 “수의사”的 진료 또는 처방을 “수의사 및 어의사로”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수산생물병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임의로 개정하였음.

이는 정부의 입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부칙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농림부의 수의사법과 보건복지부의 약사법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이해당사부처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제처관련단체 등의 사전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기르는어업육성법률안”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조문서 송부(8월 4일)후 8월 8일 임의로 입법예고하여 8월 28일까지 20일 간 단기간내에 관련기관 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부처간 합의도 안된 정부입법안에 대한 입법질서 문란행위로서

부처간 불화에 따른 정부의 신뢰성저하 및 관련 양식어업자등 대국민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직능단체간의 권익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부처간의 합의후에 입법 예고되어야 할 것임.

나. 현행 어패류 치료 등 제도상의 문제

수의사법 제2조(정의)2호규정의 동물의 정의에 어패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으나 어패류 진료의 경우 양식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양식 사업자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2항에 의거 수의사법 제2조(정의)2호의 동물의 정의범위중 어패류를 임의로 삭제하여 수의사의 진료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어패류질병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할뿐더러, 양식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하며, 수산생물전반에 걸쳐 비전문 수산생물학전공자에게 진료를 전담케 하므로서, 수산생물에 대한 약화사고와 공중 보건위생에 위해함과 동시에 동물진료질서를 문란케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다. 수산생물의 질병진료에 대한 전문성 문제

수산생물은 고래등 포유동물에서부터 각종 양식 어종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므로, 동물에 대한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는 생리학 해부학 조직학 병리학 생화학 등 수의기초과학의 배경위에

식중독, 기생충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및 항생 물질 등 유해물질잔류방지를 위하여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약리학 독성학 등의 수의학문에 대한 전문기술습득과 새로운 어류 질병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는 전공 필수 24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4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

사가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전문성이 있으며,

4년제 수산대학 졸업자는 어류해부학 어병학 등 과목 140학점을 이수하고는 있으나, 수산생물 전반에 걸친 질병 진료를 위한 자격이 없으며, 현행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어병기사로서 양식어업에 대한 사양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라. 국제사회적 및 교역상의 문제

미국 카나다 EU 호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어패류를 비롯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획득한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환경 등 환경생태계 업무에도 수의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는 실정임.

수의과대학에서는 동물에 대한 기초학문(해부 조직 생리 병리 생화학 등)과 수의공중보건학문(공중위생 미생물 약리 독성 방사선 기생충 등) 및 임상수의학문(어류질병학 임상병리학 내과학 외과학) 등을 전공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관상어 열대어 등 어병전문 동물병원이 성업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로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어류전문동물병원이 증가 추세에 있음

유엔산하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142종의 List A, B, C 동물질병중 List B에 수산생물 전염병 8종이 지정되어, 질병발생상황을 OIE에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OIE산하에 어류질병소위원회(Fish Disease



Commission)가 상설 운영되어 어류질병에 대한 조사와 연구업무가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국제교역상 어패류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시에는 동물검역관(수의사)의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EU 미국 카나다등에서는 필히 수의사에 의한 위생 증명서만을 인정하고 있음.

마. 입법체제상의 문제

“기르는어업육성법”은 수산자원조성과 어장의 개발 확충 및 정화사업등 기르는어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식산업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수산생물의 진료업무 등에 관하여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제상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예) 생산(축산법)과 진료(수의사법)는 법적으로 분리 되어 운영하고 있음

바. “어의사”용어 도입상의 문제

사람과 동물의 진료인의 용어에 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한정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수의사중에서 축종별로 “어류질병전문의”등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어의사”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

전문수의사에 의한 어패류등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로,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치료와 식중독 기생충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위생 및 국내 수산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수의사법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어패류의 진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항저삭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의학제 6년제 개편에 따른 전문적인 수의 학교육의 실시로 어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2조(진단서등)①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어패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③ 생략	제12조(진단서등)①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항저삭제) ② ~ ③ 생략	수의학제 6년제 개편에 따른 전문적인 수의 학교육의 실시로 어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